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도시 지정후 1년내 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공표〉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69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 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8.
3.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지 1년 내에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혁신도시의 <u>지정</u>)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조(혁신도시의 <u>지정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u> ----- <u>--지정, 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공표 절차 및 방법 등-----.</u>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로,

「혁신도시법」 제29조제1항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 8월말 기준 지방이전된 공공기관 150개 중 110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음(참고 1).

그런데 기존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10개 도시(2005년 12월 입지선정 완료, 2007년 4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에는 2012~2019년간 110개 공공기관이 이전된 데 비해, 2020년 10월에 지정된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4년 가량 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참고 2).

기존 혁신도시·공공기관 1차 이전(참고 3)의 경우에는 2005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별 이전여부 및 이전 지역을 먼저 확정하였고, 2005년 10월에 혁신도시 입지선정, 2007년 4월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2월부터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시작됨.

그런데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선정되었으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계획이 수

1) 「혁신도시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립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 제25조²⁾는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므로 구체적인 시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며, 대전·충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실시설계, 부지조성 공사 등의 후속조치도 함께 미정인 상황임.

즉,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지정된 지 4년 가량 경과하였으나, 이전 공공기관 결정이 지연되면서 구체적인 시책·사업 추진도 함께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하게 결정·공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게 됨.

2)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략)

[표 2]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 및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즉, 혁신도시에 있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연 연계 및 클러스터 형성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공공기관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면 혁신도시 시책 및 사업 추진 역시 순연되어 혁신도시 지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적정 기간 내에 이전 공공기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별 특성과 공공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로 신규 혁신도시에 대하여 이전 공공기관을 1년 내에 결정하도록 규율하는 것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입장³⁾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혁신도시 간 유치 경쟁도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전대상공공기관 결

3)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배치 촉구, 2023.1월, 7월)
 ↔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성명(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촉구, 2023. 3월, 5월, 11월)

정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 심사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1 공공기관 이전 현황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합계(150)		150개 (당초 153 → 변경 150)	
혁신 도시 (110)	계	110개 (당초 112 → 변경 110)	기관 통폐합으로 2개기관 축소
	부산 (13)	국립해양조사원('12.12), 영상물등급위원회('13.9), 게임물관리위원회('13.10), 영화진흥위원회('13.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9), 한국남부발전(주)('14.10), 한국주택금융공사('14.11), 한국예탁결제원('14.11), 주택도시보증공사('14.12), 한국자산관리공사('14.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12)	
	대구 (10)	중앙병역판정검사소('12.12), 한국부동산원('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13.10), 한국산업단지공단('14.1), 한국사학진흥재단('14.3), 한국가스공사('14.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4.9), 신용보증기금('14.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7), 중앙교육연수원('15.10)	
	광주 전남 (16)	우정사업정보센터('13.3), 농식품공무원교육원('13.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4), 한국콘텐츠진흥원('14.5), 국립전파연구원('1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8), 한국농어촌공사('14.9), 한국전력거래소('14.9), 한국전력공사('1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4.12), 한전KPS(주)('14.12), 한전KDN(주)('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7), 한국인터넷진흥원('17.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1)	
	울산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4.2), 근로복지공단('14.3), 한국산업인력공단('14.5), 한국동서발전(주)('14.6), 한국석유공사('14.11), 에너지경제연구원('1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15.12), 한국에너지공단('19.2)	
	강원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5),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4.12), 한국광해광업공단('15.8), 도로교통공단('15.11), 국민건강보험공단('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국립공원공단('17.4)	(통합) 한국광물자 원공사+한국광해 관리공단 → 한국 광 해 광 업 공 단 (21.9)
	충북 (11)	한국가스안전공사('13.12), 국가기술표준원('1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6), 한국소비자원('14.8), 한국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6.9), 한국교육개발원('1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	
	전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11), 한국전기안전공사('14.6), 국립농업과학원('14.7), 농촌진흥청('14.7), 한국농수산대학('15.2),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국립식량과학원('15.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5.3), 국립축산과학원('15.3), 국민연금공단('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7), 한국식품연구원('17.9)	
	경북 (11)	우정사업조달센터('13.4), 기상청 기상통신소('1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12), 조달청 조달품질원('13.12), 대한법률구조공단('14.4), 한국교통안전공단('14.4), 국립종자원('14.7), 한국도로공사('14.11), 한국전력기술(주)('15.8), 농림축산검역본부('15.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3)	(주)한국건설관리공사(폐지) → 국토안전관리원('20.12)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13.1), 한국남동발전(주)('14.4), 국방기술품질원('1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한국토지주택공사('15.4), 한국저작권위원회('15.6), 주택관리공단(주)('1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 국토안전관리원('17.12)	(통합)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20.12) ※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12), 국립기상과학원('13.12), 국세공무원교육원('15.9),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5.9), 공무원연금공단('15.9),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15.10)	
		19개	
세종시 (19)		한국개발연구원('13.12), 한국법제연구원('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14.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4.12), 산업연구원('14.12), 한국교통연구원('14.12), 한국노동연구원('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1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4.12), 한국환경연구원('14.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5.2), 축산물품질평가원('15.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15.9), 국토연구원('17.1)	
		21개 (당초 22 → 변경 21)	
개별이전 (21)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해산) 재외동포재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2 혁신도시 지정 현황

지역	위치	면적(km ²)	인구(천명)		이전완료 공공기관 (개)	사업비 (억원)
			계획	현황 (‘23.12.)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0.935	7	7.3	13	4,127
대구	동구	4.216	22	17.8	10	14,501
광주 · 전남	나주시	7.361	50	39.9	16	14,175
울산	중구	2.991	20	18.9	9	10,390
강원	원주시	3.585	31	29.4	11	8,396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30.9	11	9,969
전북	전주시, 완주군	9.852	29	29.0	12	15,229
경북	김천시	3.812	27	23.6	11	8,676
경남	진주시	4.093	38	34.0	11	10,577
제주	서귀포시	1.135	5	4.8	6	2,939

주: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20.10월)은 완료됐으나,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이 정해지는 후속 절차(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는 이뤄지기 전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3 혁신도시 추진 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2003년 6월 (정책구상 발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 시작
2004년 8월 (이전원칙 설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년 6월 (이전공공기관 확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혁신도시정책 본격 추진
2005년 8월 (전담조직 설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現 국토교통부) 설치
2005년 12월 (입지선정 완료)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7년 1월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년 4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07년 5월 (개발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2008.12. 완료)
2007년 9월 (기반조성 착공)	혁신도시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07년 12월 (지방이전계획 승인)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승인 시작
2009년 6월 (발전방안 수립)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
2012년 (지방이전 개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개시
2017년 12월 (법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3.27. 시행)
2018년 2월 (시즌2 발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8년 3월 (추진단 출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2019년 11월 (지역인재 광역화 등)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 지역인재 기이전 소급적용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20.5.27. 시행)
2019년 12월 (지방이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2020년 2월 (거점화 전략)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 마련
2020년 4월 (혁신도시 지정 기반 마련)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도에서 지정 신청 가능)
2020년 10월 (혁신도시 추가지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2021년 1월 15일 (중기부 이전고시)	기상청 대전이전 추진 *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기상청 재배치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혁신도시 소개 - 주요총괄 현황 - 추진경과)